

차 례

1. 2024년 정기총회 식순.....	1
2. 2024년 정기총회 성원보고.....	1
3. 2023년 전차회의록 승인.....	2
4. <제1호 의안>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6
5.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10
6. <제3호 의안>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25
7.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26
8. <제5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8
9.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정관개정).....	41

[부록]

■ 연혁	44
■ 조합원현황, 출자금 명부, 후원자명단	45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46

정기총회 순서

1부

오프닝 공연

2부

- 총회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 및 기명날인인 지명
- 전차회의록 승인
- 안건 심의
 - 제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정관개정)
- 회의록 채택

- 폐회 선언

전차 회의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땡이길 9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3. 참석자

재적조합원 : 216명(개인215명, 법인 1개)

- 류경미, 김선자, 설연주, 이진, 임선영, 이은영, 이수연, 이지영, 정지연, 노미정, 이상일, 김필주, 이원희, 최영희, 이경숙, 조비아, 최정화, 곽인숙, 황강연, 김지현, 이은정, 박진희, 백경자, 함경희, 김유미, 박지혜, 오서연, 이수진, 김은미, 김효진, 임정민, 안순희, 강광남, 김경희, 남연경, 김선미, 김삼숙, 한송이, 전선여, 이여정, 김종순, 이은숙, 백현옥, 김미자, 김미영, 백현미, 김수환, 이숙자, 이은정, 장영기, 신은주, 신혜정, 이혜미, 엄유경, 전은숙, 이종순, 유미영, 송미진, 임희연, 이미경, 남금화, 최점숙, 박윤진, 장연희, 정미순, 조정자, 박수정, 임동연, 황희정, 이은주, 김연호, 양미화, 이지영, 박혜진, 이정숙, 최혜진, 음지연, 박연수, 박목연, 김선영, 이경자, 이동옥, 이현숙, 류애란, 김연희, 최정자, 이희종, 박지영, 김길순, 박주희, 임해인, 이은경, 이혜숙, 조은실, 이명희, 이민옥, 홍성옥, 박재훈, 백현주, 김춘화, 박옥영, 김수연, 신희경, 손경미, 김은경, 원영실, 장현숙, 홍성남, 김은하, 오명옥, 김지숙, 조혜경, 김시애, 강지윤, 신현순, 박지혜, 양은미, 박응석, 이은순, 장미화, 임혜숙, 리응엔투어린, 박현영, 김선경, 성미라, 최정자, 유수진, 윤혜숙, 이경순, 한송이, 정은주, 권종숙, 이숙, 이미숙, 염기선, 박미정, 고순화, 신성아, 이승훈, 정준영, 안지연, 정양희, 장일미, 최윤경, 정윤수, 김은경, 이동기, 황정미, 권은경, 박미선, 이윤희, 윤은이, 정서연, 김은희, 이해영, 전준호, 안현정, 허지예, 류경숙, 하티미터, 박혜성, 최인영, 김기철, 이나래, 박경숙, 이숙희, 최을순, 온새미로의료소비자협동조합, 김정연, 유규영, 정계숙, 박선희, 배인남, 오혜정, 김숙희, 김은례, 전서영, 박선영, 김희정, 조보현, 이민재, 조수정, 윤규식, 김기순, 은성호, 오명숙, 김혜정, 김은혜, 마윤옥, 나호영, 도신형, 정미란, 유남석, 김지혜, 이은주, 나혜미, 김경화, 강태희, 장은숙, 한혜진, 홍미희, 한주희, 고영미, 김선미, 조현경, 신진선, 김경미, 길정숙, 유지영, 오지영, 윤수진, 이미자, 김종선, 홍희연, 김영진, 조영은

참석조합원 : 129명(참석 73명, 위임 56명)

- 류경미, 강태희, 고영미, 곽인숙, 권은경, 권종숙, 김경미, 김경화, 김길순, 김미영,

김미자, 김삼숙, 김선미, 김선자, 김연호, 김은경, 김은미, 김은혜, 김정연, 김종순, 김지현, 김지혜, 김효진, 나혜미, 나호영, 남금화, 노미정, 도신형, 박선영, 박연수, 배인남, 백경자, 백현옥, 설연주, 오서연, 오지영, 유남석, 유지영, 윤수진, 음지연, 이경순, 이미숙, 이수연, 이수진, 이 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B, 이정숙, 이지영, 이 진, 이현숙, 이혜미, 임선영, 장연희, 진선여, 정계숙, 정미순, 정지연, 조비아, 조수정, 조정자, 최정자, 최정화, 한송이, 한주희, 함경희, 홍미희, 홍성남, 홍성옥, 황강연, 황희정, 박진희, 임정민, 안순희, 김경희, 남연경, 김선미, 백현미, 김수환, 이숙자, 장영기, 신은주, 임희연, 박수정, 이은주, 박혜진, 이경자, 이동옥, 박주희, 이혜숙, 이민옥, 김춘화, 김수연, 장현숙, 박지혜, 김선경, 성미라, 최정자, 박미정, 신성아, 정서연, 허지예, 류경숙, 박혜성, 이나래, 이숙희, 조보현, 임희정, 은성호, 장은숙, 신진선, 길정숙, 이은순, 이민재, 이은경, 김영진, 김필주, 장미화, 정은주, 박경숙, 박재훈, 신혜정, 이동기, 이명희, 이해영, 임혜숙, 장일미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
-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 <제3호 의안>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
-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
- <제5호 의안> 임원 선출
-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총회 내용

가.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성원보고자 이진은 재적조합원 216명 중 129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하고, 의장 이사장 류경미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나.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고영미 조합원을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의장이 회의록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인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명날인인으로 이은영, 설연주, 김선자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다.

다.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라.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이 전차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마. 의안심의

<제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감사 이은영이 사업감사 결과보고, 감사 이수연이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하다.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제 1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제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사업별로 류경미, 고영미, 도신형이 2022년 사업별 활동보고를 하고 류경미가 결산내용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제2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제3호 의안 2022년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이사 김선자가 2022년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제 3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이사 설연주가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제 4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선거관리위원장 임선영이 정관 제46조(임원의 선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임기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 의안을 승인 가결되다.

성 명 : 이사장 류경미

취임 연월일 : 2023. 03. 07

성 명 : 이사 김선자

취임 연월일 : 2023. 03. 07

성 명 : 이사 이은영

취임 연월일 : 2023. 03. 07

성 명 : 이사 이진

취임 연월일 : 2023. 03. 07

성 명 : 감사 설연주

취임 연월일 : 2023. 03. 07

위 선출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을 각 승낙하였다.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제6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

바.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 3. 7.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의장 및 이사장 류 경 미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이 은 영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김 선 자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설 연 주 (인)

1호 의안 :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 제67조 (결산 등) 2항에 따라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정관 제53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감사 개요

- 1) 감사 일자 : 2024년 3 월 19일
- 2) 감사 장소 : 꿈꾸는느림보 본관
- 3) 감사 범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4) 감사 내용 : 업무(사업)집행과 자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5) 감 사 인 : 감사 설연주

2. 감사 결과 보고

1) 사업 운영부문

가. 총회 운영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2023년 3월 7일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총회 운영기간 내에 적법하게 총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9명의 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대해 승인과정을 거쳤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1번의 회의 운영을 확인하였으며, 총회에서 정한 조합의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을 확인, 그에 따른 보고 및 평가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였습니다.

2) 사업진행 및 자금운영 부문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결산 보고자료, 단위별 활동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사항을 점검하였고 자금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출증빙과 결산자료를 점검하였습니다.

가. 사업계획의 집행사항

○ 2023년도 핵심사업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교육서비스 사업	안산시 전문일자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특수체육 지원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소소한음악단>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
	안산시 문화예술기금 <우리가 보는 세상>
장애인 사회서비스 위탁사업	발달장애학생, 청소년 미술활동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리가 보는 세상>
	발달장애청년 미술창작준비과정 지원
가족지원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잇는 가치>
	뇌병변모자수영, 방학특강, 부모미술 동아리 지원
지역연대 활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가사, 신체, 이동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자립지원, 직업훈련, 지역사회탐방, 문화여가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부모미술<르아미> 지원, 미술전시회 부모음악동아리<환타> 부모책모임 지원 후원물품배분, 문화나눔티켓 배분, 숲체험, 소산서원체험 얼렁뚱땅체육대회, 성탄케익만들기 키트 배분 원데이클래스, 꽃차소믈리에 비장애형제 드론수업
	- 장애인권익옹호업소 오소가게 발굴 및 인증 -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우리마트가요>교구워크샵 - 발달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한 기관업무협약 -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비전선포식 및 연합회 활동 - 발달장애 부모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발표 - 사회경제조직 네트워킹
지역연대 활동	- 지역봉사단체 연대 플로깅 - 지역아동센터 연계 통합 놀이 활동 - 부곡고 장애인의 날 주간 미술작품 전시회 - 방과후활동센터 지역주민 감사의 달 카네이션 전달 - 안산시가족합창대회 참가 - 찾아가는음악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

조합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상세계획 수립 및 역할분담, 실행이 잘 이뤄져 모든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모,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제공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나. 자금운영(재산관리) 사항

조합의 재산관리 상황 및 비용집행 적법성을 점검하고자 조합의 예산 대비 수지결산서, 세부결산서 등을 중심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의 이용자 증가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고, 기본관리운영비가 각 단위사업비에서 직접지출되고, 조합의 후원금은 당사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지출되어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후원금과 기부금이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며 그간 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설 연



2호 의안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5항에 따라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1.조직 운영

1) 조합원 현황 (2023. 12. 31 기준)

- 총원 : 220명 (탈퇴 41명 포함)
- 출자금 : 총 431구좌 (12,930,000원)
- 정기 후원회원 : 1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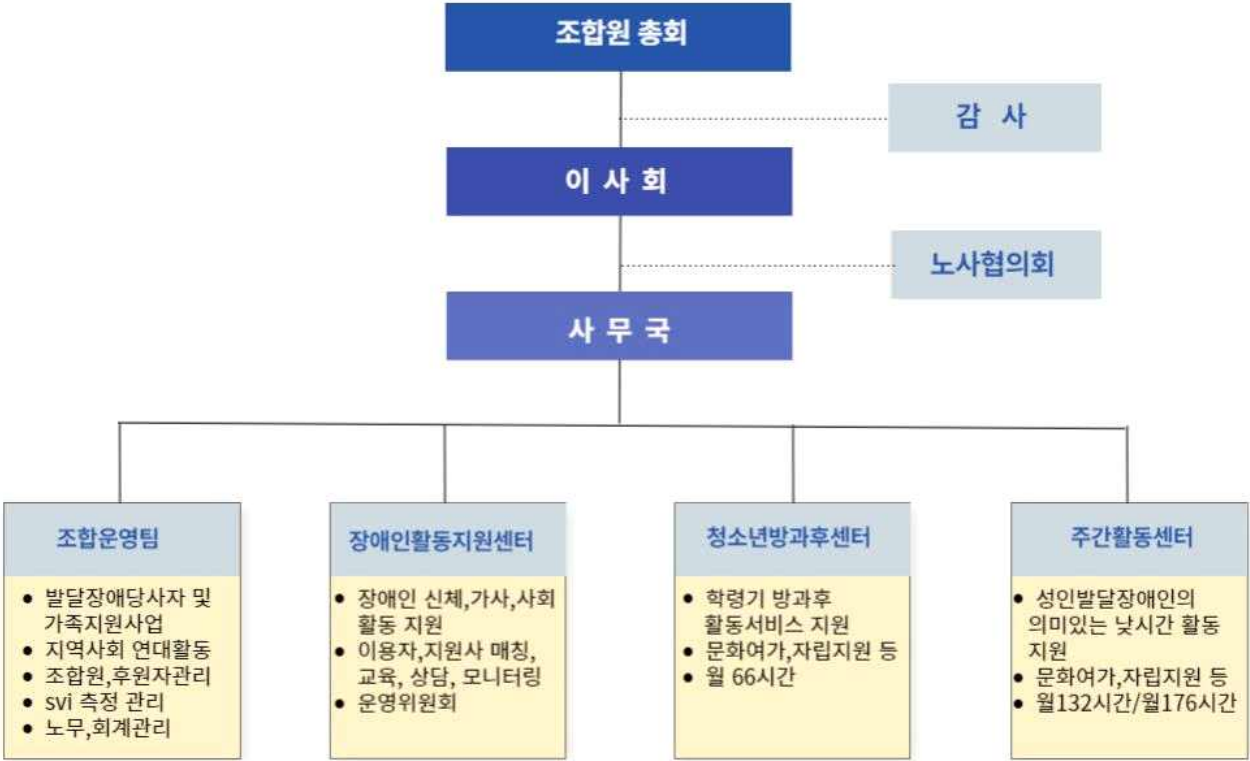
2) 임원 구성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류경미	2023.04 ~ 2025.03	
이사	김선자	2023.04 ~ 2025.03	
이사	이은영	2023.04 ~ 2025.03	
이사	이 진	2023.04 ~ 2025.03	
감사	설연주	2023.04 ~ 2025.03	

3) 이사회 개최 결과

회차	일시	주요안건	참석인원	비고
1회	2월8일	정기총회 안건 상정의 건 임원선출규정, 임원보수규정	7명	
2회	3월8일	임원보수규정	4명	
3회	5월18일	상반기 사업계획 안 하반기 미술전시회 추진의 건	4명	
4회	5월25일	발달장애지원이총협동조합연합회 전선포식참여의건 6월 사업계획의 건	4명	
5회	6월15일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구성의 건 7월 사업계획의 건	4명	
6회	7월 6일	7월 사업계획의건_교구활용 워크숍 진행의건 임직원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의 건	4명	
7회	7월13일	여름방학 특강 진행의 건 1차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진행의 건	4명	
8회	9월7일	9월 사업계획의 건 추석상여 및 추석선물 지급의 건	4명	
9회	10월5일	공모사업 중간점검의 건 경기사회적경제원 보호작업장,표준작업장 탐방의 건	4명	
10회	11월2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기관 신청의 건 제2교육관 임차 및 공사진행의 건	4명	
11회	12월1일	겨울방학 특강 진행의 건 정기총회 준비의 건 경기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의 건	4명	

4) 조직구성 (2024.02.28. 현재)



2. 2023년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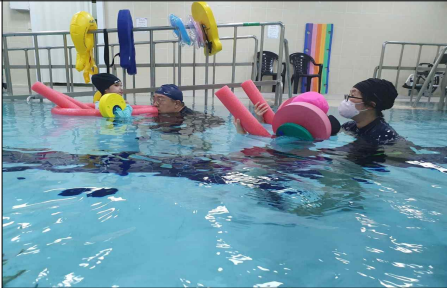
1)연간 활동일지

1월	4일	상록장애인복지관 수중센터 중고등 수영협의
	11일	이사회/ 활동지원센터 월례교육
	10일	방학특강 놀이야놀자 개강(7회기)
	18일	방학특강 초등수영/ 중고등 수영 개강(6회기)
	10일	방학특강 놀이야놀자 개강(7회차)
	12일	단원fm이사회
	19일	오소가게 협의회
	30일	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활성화 신청
	30일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사업 간담회 (우리마트가요)
2월	2일	경기도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3일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신청
	6일	치유농업프로그램_재활승마 지원사업 마감
	7일	활동지원센터 월례회의
	8일	이사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의
	9일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컨설팅
	10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연계기관 공모사업 신청
	21일	긍정적행동지원 슈퍼비전(소통과 지원 연구소) HBM네트워킹
	22일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부모 기관탐방
	28일	경기도 누림센터 누림 컨퍼런스 _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3월	2일	안산도시공사 레저수영팀과 수영협의/ 낭랑공방협의
	6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월례교육
	8일	이사회
	9일	2023년 사회공익 승마사업 신청
	7일	제3회 정기총회 개최
	16일	낭랑공방협의
	17일	발달장애인 모델관련 설명회 및 시연(비긴21) 디에스클린 협의
	23일	사람과세상 경영컨설팅 노무컨설팅
	24일	안산희망재단 협의체(기부세미나)
	30일	낭랑공방, (사)착한기술융합사회
4월	31일	부모교육_핸드폰으로 쉽게 찍는 사진
	1일	자폐인의날 캠페인
	5일	이사회
	5일	활동지원센터 월례회의/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박관찬)
	8일	토요멀티스포츠 개강
	6일	노무 컨설팅
	6일	오소가게 현판식
	10일	꿈나무육성재단 장학금
	13일	부곡고 발달장애인식개선 미술전시회 참여

	18일	사회적가치교육 ESG교육
	19일	인사/ 노무 컨설팅
	21일	방과후센터 모니터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산시)
	27일	원데이클래스_비누꽃 바구니(조합원)/ 28일 임직원
5월	4일	활동지원센터 월례교육 드림위드양상블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보노마루소극장
	11일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프로그램 협의
	12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 비전선포식
	16일	임직원 워크샵
	18일	이사회/ 오소가게 협의체
	20일	안산시 가족합창대회_방과후센터
	31일	엄마들의 책마당 개강
6월	1일	마음토닥운영위원회
	2일	발이연 준비위원회 비전선포식 사전모임
	5일	북토크<누가 뭐라든 너는 소중한 존재_이수현 작가>
	8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비전선포식
	14일	방과후활동센터 부모간담회
	15일	이사회
	15일	두근두근사회적협동조합 기관탐방
	19일	상록구 특수교사모임 기관탐방
	19일	부모교육 <협동조합&사회경제조직의이해>_6회기
	22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소가게 사례발표
	27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
7월	3일	동극-별주부전(꿈꾸는아이 단체 재능기부)
	6일	이사회
	7일	꿈꾸는그림보사회적협동조합 취업규칙 신고
	10일	발달장애부모자조모임 <협동조합 사례 발표>
	27일	발달장애자녀 신분증용 사진촬영
	11일	예비사회적기업 안산시,고용노동부 합동점검
	18일	경제보드게임 <우리마트가요>교구활용 워크샵
	18일	위드엘로힘 지역사회연대활동 사동 플로깅
	19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돌봄분과 워크샵
	20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24일	여름방학체험 스토리텔링 마술쇼
	25일	여름방학 가족체험 영화상영
	25일	여름방학특강_미술, 특수체육
8월	7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월례회의
	8일	SVI 측정평가교육_안산시사경센터
	16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워크샵
	17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기관평가 컨설팅
	17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21일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현장 챗GPT 활용교육
	24일	대전 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센터 기관장 기관방문

9월	26일	경기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5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5일	여성기업 실사면접
	13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지원사업 참여
	14일	오소잡담회
	15일	인천 청인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발표
	19일	따또 정기회의
	25일	긍정행동지원 협력회의
10월	26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발표
	4일	발달장애가족체험 양평 치유의 숲 체험
	6일	마음토닥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2일	인천청인학교 학부모회 기관 탐방
	14일	발달장애가족체험 소산서원 체험
	16일	동탄아르딴복지관 부모자조모임 기관 탐방
	17일	충남 직업재활시설 민들테일터 탐방
	24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거 간담회
11월	26일	오소잡담회
	1일	상록장애인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 참여
	4일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농작물(무) 나눔
	9일	더불어숲 자기주장대회 심사
	10일	임직원소양교육 MBTI교육_4회기
	13일	안산시사회경제조직 워크숍
	16일	안산시 오소가게 현판식
	20일	<우리가 보는 세상> 미술전시회(11/20~26)
	28일	안산시 오소가게 상점주간담회 (상록구)
	29일	안산시 오소가게 상점주간담회 (단원구)
	30일	논산 발그레일터 방문
12월	2일	얼렁뚱땅체육대회
	5일	경기도청 오체투지_발달장애인돌봄체계구축
	7일	경기도사회경제원 사회적경제박람회
	11일	성남부모회 기관 탐방
	12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12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사 송년회
	14일	오소잡담회
	15일	군포장애인복지관 부모자조모임 기관탐방
	21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하반기 운영위원회
	21일	크리스마스 케이크 나눔
	22일	안산학연구회 산타행사
	28일	부모교육 장애자녀 새학기 준비, 양육 코칭

2) 주요 활동 내용

사 업 명	활 동 내 용
1) <같이 잇는 가치> -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 사업비 11,400,000 (보조금 10,000,000 자부담 1,290,000) - 4월~11월 - 모자수영 25회 - 장애학생미술 50회 - 부모미술르아미 23회 - 연 98회	     
2) 2023년 <우리가 보는 세상>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 사업비 4,800,000 (보조금 4,000,000 자부담 800,000) - 4월~11월 - 학령기발달장애학생 - 미술활동과 전시회 - 5명*2팀*24회, 연120명 - 미술전시회 1회 - 참여가족 간담회	     

3) <우리가 보는 세상>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사업비 15,000,000
(보조금 15,000,000)
- 4월~10월
- 성인기발달장애인5명
- 중고등장애학생 5명
- 10명*35회기
- 창작준비과정
미술전시회



4) <소소한 음악단>

-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
- 사업비 3,340,000
(보조금 3,000,000
자부담 340,000)
- 5월~10월
- 오르프 음악수업
- 7명*30회, 연 210명
참여가족간담회 2회



5) 발달장애인
동아리지원

- 멀티스포츠A,B
(월1회*7명*1개반)
- 방송댄스
(월4회 7명*1개반)
- 난타
(월4회 7명*1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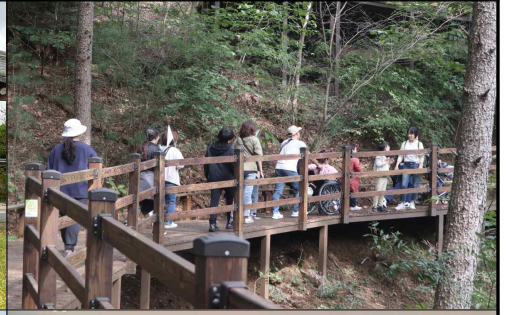
6) 발달장애인 방학특강

- 미술
(월2회*7명*2개반)
- 볼링
(월4회 7명*2개반)
- 생활체육
(월4회 7명*2개반)
- 사진촬영
(월4회 4명*2개반)
- 연극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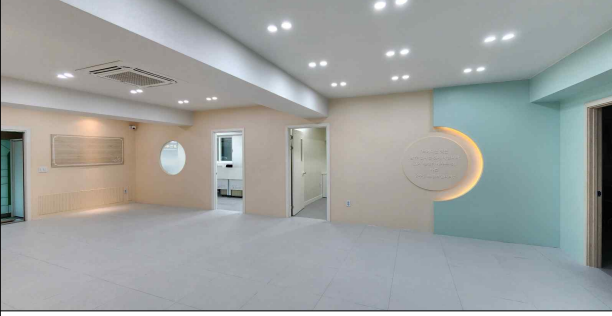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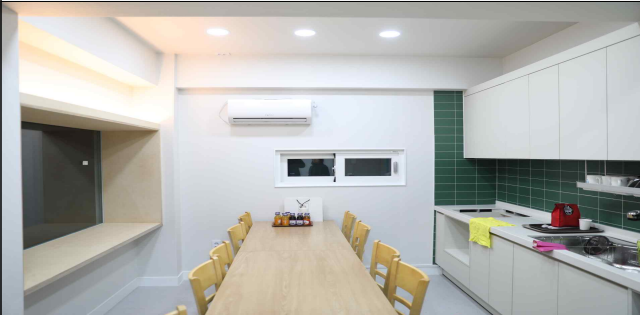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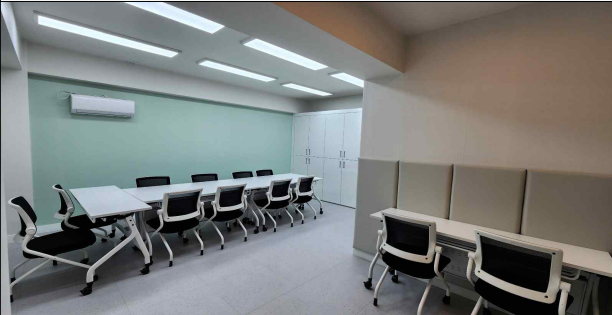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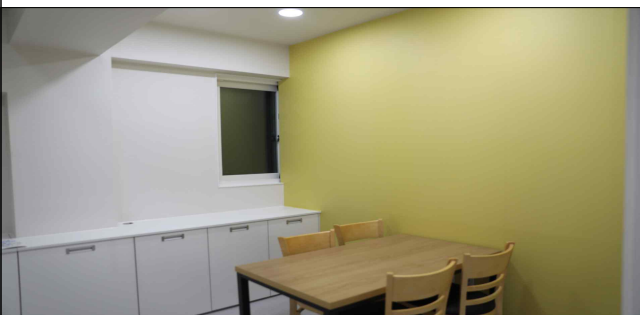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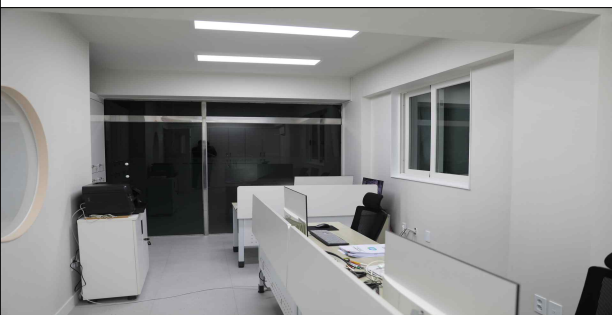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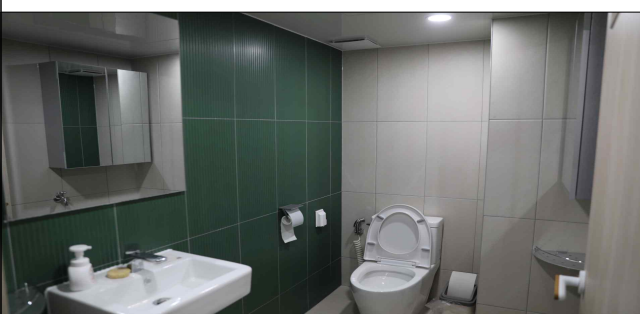
발달장애 가족지원

- 숲체험, 소산서원
- 비장애자녀 드론체험
- 부모 음악동아리
- 부모 책동아리
- 얼렁뚱땅체육대회
- 후원물품배분
- 문화나눔티켓



3) 제 2교육관 개관

- 주소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땡이길 78-1 1층
- 공간활용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사 교육, 조합원교육 등

안산시 상록구 사동 땡이길 78-1	
	
교육관전경	프로그램 1실
	
프로그램 2실	프로그램 3실
	
휴게,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3)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 및 매칭활동
- 신규 제공인력 관리, 교육 강화
- 모든 장애유형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사례관리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발달장애 학생 자립, 문화여가, 지역탐방 등
-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통합 놀이활동
-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슈퍼비전

4)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1) 기부후원금 모금 및 지출의 투명성

(2) 기부자 연말정산 처리

(3) 후원자 관리

5) 2023년 사업 총평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3년차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혁신사업을 지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의 여러 협력기관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거지원과 장애인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작업장 등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정책을 살펴보고 성인기 이후 일자리와 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결산안

1)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결산안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3년 결산	2023년 예산
세입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19,017,675	
	사업수입	사업수입	교육서비스	발달장애인 교육,동아리 자부담	33,319,750	25,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보조금(공모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32,000,000	80,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관리중심형일자리			
	기부금수입	기부금수입	기부금	후원금 및 일반기부금	63,301,216	80,000,000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신규 조합원 가입 출자금	323,000	
	집수입	집수입	기타 잡이익	이자수익 등	12,410	500,000
세 입 계					147,328,051	185,500,000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3년 결산	2023년 예산	
세출	사무비	인건비	임직원 임금	사무국 임직원 인건비	28,102,010	48,000,000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충역 /12월	2,068,000	4,000,000	
			4 대 보 험	사업주 부담분	1,954,230	5,000,000	
			복리후생비	임직원 식대 등	10,465,600	8,000,000	
			소계		42,589,840	65,000,000	
	시설비	재산조성비	자산취득비	기자재 비품 사무기기 구입비용	164,000	10,000,00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유지 보수비		5,000,000	
			비품,수선비	사무실, 교육장 비품등 수선비	140,000	10,000,000	
			소계		304,000	25,000,000	
	사업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출장여비		1,200,000	
			접대비	연대 애경사 및 연대활동비	2,974,700	2,000,000	
			회의비	회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2,799,330	8,000,000	
			협회비		302,100		
			기부금		2,195,500		
		기관운영비	재세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세무조정료	-	2,263,380	5,000,000
			지급수수료	기장료, 사무기기, 렌탈용품		9,915,570	8,000,000
			소 모 품 비	소모품 구입		570,479	7,000,000
			사무용품	사무용품구입			1,450,000
			도서인쇄비	도서구입 및 인쇄물		1,017,410	1,500,000
			통신비	우편, 통신비		887,380	3,000,000
			차량유지비	유류대		1,460,950	2,400,000
			보험료	배상책임, 건물화재보험, 보증보험 등		120,000	2,000,000
			교육훈련비	임직원 워크샵 및 교육훈련비		422,300	2,000,000
			임차료	건물임차료, 임차보증금 등		2,000,000	
		장애인지원사업비	강사비	교육, 동아리 강사비		24,559,200	40,000,000
			시설이용료	미술전시회 대관료 및 시설이용료		6,497,500	1,000,000
			간식비, 간담회비	프로그램별 간식 및 간담회진행비		1,675,300	1,000,000
			프로그램진행비	재료비 외		5,257,338	5,000,000
			홍보비	도록, 브로셔, 인쇄비		1,636,934	5,000,000
			공모사업1	경기도교육청<같이잇는가치>		11,290,000	
			공모사업2	안산문화예술진흥사업<우리가보는세상>		4,800,000	
			공모사업3	안산장애인복지기금<소소한음악단>		3,340,000	
			공모사업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우리가보는세상>		15,900,000	
			기타지원비	발달장애가족지원비		1,000,000	
			기타 사업예비비	외부강사 초청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비			10,000,000
			소계			98,358,611	105,550,000
	차 기 이 월 금				6,075,600		
조합 세출계					147,024,051	195,550,000	

2)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안

꿈꾸는노름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서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보조금	2,930,000,000	3,184,662,960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전기 이월금	350,000,000	343,064,237	
	잡수입	잡수입	이지수입	예금결산이자	220,000	310,817	
			현장실습	활동지원사 현장실습비	1,200,000	1,084,000	
			기타잡수입	고용촉진 장려금 등	7,200,000	7,200,000	
세 입 계				-	3,288,620,000	3,536,322,014	
지출과목				내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세출	사무비	인건비	전담인력급여	전담인력 급여	135,000,000	111,500,950	
			전담인력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12월	13,500,000	11,064,120	
			전담인력 4 대 보 험	사회보험 사업주부담금	9,900,000	9,459,410	
			복리후생비	전담인력 식대 등	13,000,000	9,436,190	
			소계	-	171,400,000	141,460,670	
		기관 운영비	교육훈련비	전담인력 교육비	456,000	57,100	
			처우개선비	전담인력 의료비 지원 등	494,700	494,700	
			소계	-	950,700	551,800	
			기타운영비및수수료	기타 운영비 및 수수료	3,000,000	5,292,110	
			소 모 품 비	소모품, 사무용품	3,500,000	2,581,870	
			지급수수료	각종 대여료	3,952,940	2,336,650	
			지급임차료	차량 렌트비	8,000,000	8,970,950	
			전화통신비	통신비, 우편	2,300,000	2,229,450	
			차량유지비	유류대, 주차비	1,600,000	1,408,354	
			건물임차료	임차료	15,600,000	15,600,000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수도광열비	8,000,000	7,383,230	
			소계	-	45,952,940	45,802,614	
		사무비 계		-	218,303,640	187,815,084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비품 구입비	327,000	1,192,800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등 수리비용	800,000	110,000
	비품,수선비			사무실, 교육장, 비품 등 수선비	500,000	678,000	
	시설비 계		-	1,627,000	1,980,800		
	사업비	활동지원 인건비	활동지원사급여	활동지원수입금의 75%	2,400,000,000	2,366,938,968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12월	240,000,000	251,102,416	
			4대보험	사회보험 사업주부담금	200,000,000	193,289,200	
			제수당	법정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45,000,000	39,420,000	
			복리후생비	명절선물, 의료비 지원 등	20,000,000	17,286,500	
			소계	-	2,905,000,000	2,868,037,084	
		기타비용	이용자관리비	이용자 상담 및 외근비	3,300,000	5,224,400	
			통 신 비	단말기 관리비	1,000,000	1,018,310	
			활동지원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공제 등	4,290,000	4,290,000	
			회의진행비	원래교육진행비	2,000,000	1,680,020	
			소계	-	10,590,000	12,212,73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000,000		
					5,000,000	-	
		사업비 계		-	2,915,590,000	2,880,249,814	
		차기이월금					153,099,360
세출계				-	3,288,620,000	3,536,322,014	

3) 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 세입세출 결산안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2023년 방과후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			
2024년 차기이월	전기이월	세입	세출
36,318,536	23,163,923	258,596,920	245,442,307

▶수입			
수입총계	바우처수입	교육비	전문일자리지원금, 기타
258,596,920	234,135,250		24,461,670

▶지출				
세부사업별		지출과목	23년 예산	23년 결산
사업비	인건비	종사자인건비	130,000,000	130,598,447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37,000,000	37,507,853
		소계	167,000,000	168,106,300
	프로그램 진행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행비	18,000,000	16,953,200
		시설대관료	3,000,000	2,569,300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프로그램강사비	13,500,000	13,689,000
		프로그램 관련 비품구입비	500,000	966,100
		프로그램 진행시 간식비	1,600,000	1,604,610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통비		
소계	36,600,000	35,782,210		
사업비 계		203,600,000	203,888,510	
운영비	인건비	대체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12,300
		유급 보조인력 활동수당등		895,100
		소계	-	907,400
	시설비 및 공공요금	제공기관 임대료	15,600,000	15,601,800
		전기세,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등	4,500,000	4,200,170
		소계	20,100,000	19,801,970
	사업제반 비용	사업홍보비	1,000,000	675,500
		이용자 배상보험가입		-
		제공인력 교육비		20,000
		소계	1,000,000	695,500
	송영비	기관 송영차량 유지비	-	-
		기관 송영차량 유류비	-	-
		소계	-	-
	기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등 수용비 및 수수료	3,000,000	2,545,490
		사무비품 구입비	2,000,000	1,752,950
		기타기관 운용비	20,300,000	15,850,487
		소계	25,300,000	20,148,927
	운영비 계		46,400,000	41,553,797
	세출계		250,000,000	245,442,307

3호 의안 :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5항에 따라 2023년 잉여금 처분(안)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안	
총 이익잉여금	462,975,796원
1. 임의적립금	138,892,738원
2. 자산형성적립금	50,000,000원
3. 이월잉여금	274,083,058원

2023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 462,975,796원에 대하여 제25조 법정적립금¹⁾, 제26조 임의적립금²⁾에 의거하여 임의적립금 138,892,738원을 적립하고 50,000,000원을 자산형성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74,083,058원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을 승인을 요청합니다.

1)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4호 의안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정관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1항,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9항, 제35조 (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제4항에 따라 탈퇴조합원 14명의 출자금 450,000원에 대한 환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3년 탈퇴조합원 환급내역

*1좌당 금액 : 30,000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고
1	이상일		1	30,000	
2	김수환		2	60,000	
3	임희연		1	30,000	
4	최점숙		1	30,000	
5	조정자		1	30,000	
6	박혜진		1	30,000	
7	박지영		1	30,000	
8	윤수경		1	30,000	
9	권종숙		1	30,000	
10	정서연		1	30,000	
11	전서영		1	30,000	
12	오현민		1	30,000	
13	김종선		1	30,000	
14	양은미		1	30,000	
합계			15	450,000	

5호 의안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4항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4년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I. 사업 추진 배경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어 독립적 수행기능을 높일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부모들의 바람이 녹아있는 곳이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 및 재능을 발굴하고,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시설에 머물지 않고 나고 자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지원방법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며 사업을 지원과 지원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중이다.

또한 장애당사자의 자립과 장애당사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장애관련 인식개선의 기반을 만들며 더불어 사는 상생과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 더불어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II. 내외부 환경 분석

발달장애의 경우 학습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장애당사자에게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가족들에게는 장애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장애인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제공인력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풀어갈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환경이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장애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령기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조합에서 위탁사업을 운영함으로 기존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III. 사업 목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V. 사업 추진 방향

-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운영 및 위탁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공모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서비스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V. 사업 추진 계획

1.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업

1) 사업 목표

-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학령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할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 프로그램 제공
- 기존 복지관이나 주간활동,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 체육, 난타활동 등을 통해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2) 세부사업 내용

- 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체력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 다. 장애인 문화 예술 서비스

3) 당해연도 세부 일정 및 계획안

프로그램명	연추진계획	장 소	월이용료	참여인원수	
				장애인	비취약계층
방송댄스	10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2만원	120명	
난타	7명*월4회*12개월	국제타악퍼포먼스	4만원		
소소한 음악단	7명*월1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2만원		
엄마랑수영(보행장애)	6명*월4회*12개월	상록장애인복지관	4만원		
중고등수영(2)	8명*월4회*12개월	상록장애인복지관	6만원		
미술동아리(4)	20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10만원		

멀티스포츠	7명*월4회*12개월	티알스포츠	2만원		
체육대회	연간 80명	외부기관			
미술전시회	연간 20명	외부기관			
연간 참여자수				120명	0명
* 위 프로그램과 이용금액은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사업

- 1) 사업 목표
- 취약계층과 함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없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통합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 2) 세부사업 내용
- 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

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중활동서비스 제공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마.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3) 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사업명	시 기	참여대상	비고
		취약계층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간	180	16,150원*120시간*130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간	35	16,150원*66시간*35명
성인 발달장애인 주중활동서비스	연간	15	16,150원*132시간*15명

4) 예산편성

수 입		지 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20,496천원	인건비(전담,활동지원사)	3,893,500천원
		기관운영비, 예비비	326,996천원
방과후활동센터	324,012천원	인건비(전담,방과후제공인력)	182,955천원

		프로그램 진행비 및 운영비	141,057천원
주간활동서비스	227,392천원	인건비(전담,주간활동공인력)	147,097천원
		프로그램 진행비 및 운영비	80,295천원
합계	4,771,900천원	합계	4,771,900천원

3.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1) 사업 목표

- 경기도 장애인맞춤일자리 공모사업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

2) 세부사업 내용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지역사회 편의시설 모니터링, 오소가게 발굴하기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미술전, 악기배우기, 음악감상 등
-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 오티즘 엑스포 참여, 거리행진, 지역사회축제 부스 참여

3)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제품	일 정	장 소	작업기간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2월 ~ 12월	꿈꾸는느림보	주16시간/주20시간 근로

4)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경기도 보조금		133,533,000	인건비		139,833,000원
			활동비		28,840,000원
자부담		45,640,000	관리운영비		10,500,000원
합계		179,173,000원	합계		179,173,000원

4. 기타 사업

1)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1) 사업 목표

- 장애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경감과 삶의 질 향상
- 장애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및 그룹스터디

(2) 세부사업내용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음악프로그램, 미술활동 등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 교육
- 미술동아리 르아미 미술전시회
- 부모 음악 동아리 지원 사업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프로그램명	시 기	추진계획	참여대상	장 소	비고
			비취약계층		
발달장애자녀 양육 교육	년간6회	10명*월1회*6개월	110명	꿈꾸는느림보	외부강사교육
부모 미술/르아미	3월~12월	10명*월4회*10개월		꿈꾸는느림보	
부모 음악동아리 지원	3월~12월	10명*월4회*12개월		꿈꾸는느림보	

(4)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 편성 내역

수 입			지 출		
프로그램 이용료	부모교육		강사료	500,000원×10개월	5,000,000원
	르아미40,000*10*10월	4,000,000원		400,000원×12개월	4,800,000원
	환타 30,000*10*12월	3,600,000원	재료비	실비	3,000,000원
합계		7,600,000원	합계		12,800,000원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1) 사업목표

- 지역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활동

(2) 세부사업내용

- 발달장애 아카데미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서비스제공인력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유형별 에티켓 교육
- 발달장애인 조력자 발굴 및 양성
- 문화예술부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문화예술 공유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프로그램명	시 기	참여대상		장 소	비고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발달장애 아카데미	연 4회		90명	꿈꾸는느림보	
문화예술공연 및 부스운영	연 2회		100명	꿈꾸는느림보 및 외부기관	

(4)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사업 예산 편성 내역

수 입			지 출		
교육비	발달장애 아카데미	무료교육	강사료	200,000원×6회기	1,200,000원
			부스운영	500,000원×2회기	1,000,000원
합계		0원	합계		2,200,000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 사업 목표

- 조합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
- 조합원 대상 워크숍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직원 상담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소속감 증진

(2) 세부사업내용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미래활동가 교육 및 양성
- 조합원과 임직원의 사회경제조직 이해교육
- svi가치측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교육
- 장애관련 조합원 정보공유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교 육	세부내용	대상	기 관	비 고
미래활동가 양성교육	- 사회경제조직 이해하기	조합원 및 활동가	꿈꾸는느림보, 외부기관	연 2회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조합원, 직원	외부 기관	연 4회
워크숍	- 임직원 워크숍 - 임원 사업계획 및 결산 회의	임직원	꿈꾸는느림보, 외부기관	연 2회
정보제공	- 밴드를 통해 정보 제공 -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합의 정보제공	조합원, 직원	꿈꾸는느림보	수시

(4) 조합원 직원 교육 관련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조합원역량강화 강사료	300,000원×10회	3,000,000원
합계			합계		
			3,000,000원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 사업 목표

- 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화 접점 기회
- 조합의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조합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

(2) 세부사업내용

- 네트워크 연합회, 연대 등 단체가입 및 협의회 활동
- 사회경제조직간 공유, 협업 사업

(3)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계 획	일 정
네트워크 공유회	성과공유회	연말
	발달장애인 조직간 네트워크 연대회의	년1회
네트워크 사업	사회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공유협업사업	연중

(4) 조합간 협력사업 관련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연대회의,참가비		1,500,000원
합계		합계		
		1,500,000원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 사업 목표

- 조합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
- 조합의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2) 세부사업내용

- 기관사례 발표 및 부스운영을 통한 홍보
- SNS, 밴드, 홈페이지, 페이스북 정보게시

- 시청 및 각동별 행정복지센터 브로셔비치
- 지역사회 마을축제 참가 및 축제 부스운영 및 참가예정

(3) 당해 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계 획	일 정
조합 홍보	안산시청 및 각동별 행정복지센터 리플릿 배포	연중
	SNS 활용 정보 공유	연중
지역사회사업	안산시,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공모사업 수행	연중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협업	연중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협업	연중

(4) 조합 홍보 및 지역사회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수 입			지 출		
			1. 리플릿 제작	1,000부	1,000,000원
			2. 행사 기념물품비		2,000,000원
합 계			합 계		3,000,000원

VI. 2024년 예산 계획

1. 꿈꾸는노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예산안

2024년 꿈꾸는노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예산안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4년 예산	2023년 예산
세입	이월금수입	이월금수입	전기이월금		6,075,600	
	사업수입	사업수입	교육서비스	발달장애인 교육,동아리 자부담	25,000,000	25,000,000
	사업수입	사업수입	보조금(공모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200,000,000	80,000,000
	기부금수입	기부금수입	기부금	후원금 및 일반기부금	70,000,000	80,000,000
	출자금	출자금	출자금	신규 조합원 가입 출자금	7,000,000	
	잠수입	잠수입	기타 잡이익	미자수익 등	3,000,000	500,000
세 입 계					311,075,600	185,500,000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4년 예산	2023년 예산
세출	사무비	인건비	임직원 임금	사무국 임직원 인건비	18,000,000	48,000,000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종액 /12월		4,000,000
			4 대 보 험	사업주 부담분		5,000,000
			복리후생비	임직원 식대, 야근식대	5,000,000	8,000,000
			소계		23,000,000	65,000,000
	시설비	재산조성비	자산취득비	기자재 비품 사무기기 구입비용	5,000,000	10,000,00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유지 보수비	3,000,000	5,000,000
			비품,수선비	사무실, 교육장 비품등 수선비	3,000,000	10,000,000
			소계		11,000,000	25,000,000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출장여비	1,000,000	1,200,000	
		협대비	연대 애경사 및 연대활동비	3,000,000	2,000,000	
		회의비	회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2,000,000	8,000,000	
		협회비		3,000,000		
		기부금		5,000,000		
		기관운영비	세제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세무조정료	3,000,000	5,000,000
			지급수수료	기장료, 사무기기, 연달용품	3,000,000	8,000,000
			소 모 품 비	소모품 구입	2,000,000	7,000,000
			사무용품	사무용품구입	2,000,000	1,450,000
			도서인쇄비	도서구입 및 인쇄물	1,000,000	1,500,000
	통신비		우편, 통신비	1,000,000	3,000,000	
	차량유지비		유류대	1,500,000	2,400,000	
	보험료		배상책임, 건물화재보험, 보증보험 등	500,000	2,000,000	
	교육훈련비		임직원 워크샵 및 교육훈련비	1,500,000	2,000,000	
	임차료		건물임차료, 임차보증금 등	8,000,000		
	장애인지원사업비	강사비	교육, 동아리 강사비	20,000,000	40,000,000	
		시설이용료	미술전시회 대관료 및 시설이용료	3,000,000	1,000,000	
		간식비, 간담회비	프로그램별 간식 및 간담회진행비	1,500,000	1,000,000	
		프로그램진행비	재료비 외	2,000,000	5,000,000	
		홍보비	도록, 브로셔, 인쇄비	3,000,000	5,000,000	
		공모사업1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비	179,173,000		
		공모사업2	지자체 공모사업	20,827,000		
		기타지원비	발달장애가족지원비	8,000,000		
		기타 사업예비비	장애인식개선 사업비 등	2,075,600	10,000,000	
		소계		277,075,600	105,550,000	
조합 세출계					311,075,600	195,550,000

2.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예산안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2024년 예산서					
구분	관	항	목	내 용	2024년 예산
세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보조금	4,219,776,000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전기 이월금	466,276,316
	접수입	접수입	이자수입	예금결산이자	
			현장실습	활동지원사 현장실습비	720,000
			기타접수입	고용촉진 장려금 등	
세 입 계				-	4,686,772,316

지출과목				내 용	2024년 예산
세출	사 무 비	인건비	전담인력급여	전담인력 급여	134,000,000
			전담인력 퇴직금 및 적립금	급여총액/12월	14,000,000
			전담인력 4 대 보 험	사회보험 사업주부담금	7,000,000
			복리후생비	전담인력 식대 등	14,000,000
			교육훈련비	전담인력 교육비	3,000,000
			처우개선비	전담인력 의료비 지원 등	2,000,000
			소계	-	174,000,000
			활동지원사급여	활동지원사 급여	3,142,000,000
			활동지원사제수당	법정제수당,근속수당,연차수당	80,000,000
			활동지원사 4대보험	사회보험 사업주부담금	157,100,000
			퇴직금 및 적립금	활동지원사 급여/12월	314,200,000
			복리후생비	명절선물, 의료비 지원 등	26,200,000
			소계	-	3,719,500,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회의비	2,000,000
				대외기관 업무추진비	2,000,000
			소계		4,000,000
			사무운영비	소모품비	소모품,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육자료 인쇄	1,000,000
		지급수수료		각종 수수료	3,000,000
		기타수수료			1,000,000
		통신비		통신비, 우편	4,000,000
		차량유지비		유류대, 주차비	2,400,000
		지급임차료		차량, 사무실임차료	20,400,000
		제세공과금		공과금, 수도, 전기,가스요금	2,400,000
		기타기관운영비		건물관리비 외	12,000,000
		소계		-	49,800,000
		사무비 계			-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기타시설비	36,000,000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등 수리비용	12,000,000
			비품,수선비	사무실, 교육장, 비품 등 수선비	24,000,000
		시설비 계			-
	사업비	활동지원사업비	지원사교육비	월례교육진행비	10,800,000
			지원사관리비	모니터링비	4,000,000
			활동지원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공제 등	10,800,000
			통신비	단말기관리비	1,000,000
			소계	-	26,600,000
		이용자지원사업비	이용자교육비	상하반기 교육	10,800,000
			이용자관리비	이용자관리비, 상담, 장애인의날	14,400,000
			소계		25,200,000
		기타사업비	예비비	기타 장애복지사업비	15,000,000
		사업비 계			
	차기이월금				
세출계				-	4,686,772,316

3. 방과후활동서비스센터 예산안

2024년 방과후센터 예산안

구분	항목	시간	단가	1인당 월간 바우처	인원	월합계	개월수	년합계	비고
	전기이월							36,318,536	
수입	방과후 활동 바우처	66	14,530	958,980	25	23,974,500	12	287,694,000	
	수입 합계							324,012,536	
지출	관	항	목					금액	비고
	사업비	인건비	종사자인건비		12,254,456	12	147,053,480		수익대비 프로그램비율 17.7%
			사회보험및 퇴직금		2,991,865	12	35,902,380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비		3,200,000	12	38,400,000		
			대관료		300,000	12	3,600,000		
			간식비		300,000	12	3,600,000		
			재료비 진행비등		800,000	12	9,600,000		
	운영비	인건비	유급보조인력		300,000	12	3,600,000		
		시설비 및 공공요금	임대료		1,400,000	12	16,800,000		
			제반비용		100,000	12	1,200,000		
			공공요금 등		500,000	12	6,000,000	전기,전화, 렌탈비용	
		기타운영비	사무용품비,소모품등 수용비		300,000	12	3,600,000		
			사무비품		200,000	12	2,400,000		
			기타운영비		18,000,000	1	18,000,000	제2교육관	
					600,000	12	7,200,000	자동차렌탈	
				1,000,000	12	12,000,000	식대,기타운 영비		
		지출 합계							308,955,860
	차기이월							15,056,676	

4.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예산안

2024년 주간활동센터 예산안

구분	항목	시간	단가	1인당 월간 바우처	인원	월합계	개월수	년합계	비고	
수입	바우처	132	16,150	2,131,800	8	17,054,400	10	170,544,000		
		176	16,150	2,842,400	2	5,684,800	10	56,848,000		
	수입 합계							227,392,000		
지출	관	항		목				금액	비고	
	사업비	인건비	총사자인건비		6	12,258,100	10	122,581,000		
			상여금		6	6,129,050		6,129,050	50%	
			사회보험및 퇴직금		6	1,838,715	10	18,387,150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비			1,200,000	10	12,000,000	수익대비 프로그램비율 20%	
			재료비 진행 비 등			500,000	10	5,000,000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2,560,000	10	25,600,000		
			프로그램 비 품구입			300,000	10	3,000,000		
	운영비	인건비	유급보조인력			200,000	10	2,000,000		
		시설비 및 공공요금	임대료			1,200,000	10	12,000,000		
			제반비용			100,000	10	1,000,000		
			공공요금 등			500,000	10	5,000,000		
		기타운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등 수용비			300,000	10	3,000,000		
			사무비품			200,000	10	2,000,000		
			기타운영비			200,000	10	2,000,000		
		지출 합계							219,697,200	
	차기이월							7,694,800		

6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정관 제50조(임원의 임기) 1항에 따라 정관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현행	변경안	변경내용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①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중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대한 정기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로 한다.

부 록

■ 미션, 비전 , 연혁	44
■ 조합원현황, 정기후원자명단	45
■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46

MISSION

장애유무를 떠나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VISION

-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위탁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과 참여

연 혁

- 2023년 11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우수기업 인증
- 2023년 9월 여성기업 지정
- 2022년 4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함께 가는 길동무>
- 2022년 4월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같이 잇는 가치>
- 2022년 2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2021년 11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우수 SVI(사회적가치지표) 최우수기업선정
-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안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21년 7월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15개, 발달장애인 단시간 돌봄서비스/부모동아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컨소)수행/장애자녀양육코칭/ 부모교육진행
- 2021년 4월 2일 꿈꾸는느림보 교육관 개소식
- 2021년 3월3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 2021년 3월31일 기획재정부 공익법인(기부금 단체)지정
- 2020년 12월7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최우수상
- 2020년 7월23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 2020년 7월16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설립인가
- 2020년 5월27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선정
- 2019년 12월23일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9년 7월~12월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 및 회의
- 2015년 7월17일 꿈꾸는느림보 자조모임결성(임의단체 등록)

조합원 현황 (2023.12.31 현재, 220명)

류경미, 김선자, 설연주, 이진, 임선영, 이은영, 이수연, 이지영, 정지연, 노미정, 김필주, 이원희, 최영희, 이경숙, 조비아, 최정화, 곽인숙, 황강연, 김지현, 이은정, 박진희, 백경자, 함경희, 김유미, 박지혜, 오서연, 이수진, 김은미, 김효진, 임정민, 안순희, 강광남, 김경희, 남연경, 김선미, 김삼숙, 한송이, 전선여, 이여정, 김종순, 이은숙, 백현옥, 김미자, 김미영, 백현미, 이숙자, 이은정, 장영기, 신은주, 신혜정, 이해미, 엄유경, 전은숙, 이종순, 유미영, 송미진, 이미경, 남금화, 박윤진, 장연희, 정미순, 박수정, 임동연, 황희정, 이은주, 김연호, 양미화, 이지영, 이정숙, 최혜진, 음지연, 박연수, 박목연, 김선영, 이경자, 이동옥, 이현숙, 류애란, 김연희, 최정자, 이희종, 김길순, 박주희, 임해인, 이은경, 이해숙, 조은실, 이명희, 이민옥, 홍성옥, 박재훈, 백현주, 김춘화, 박옥영, 김수연, 신희경, 손경미, 김은경, 원영실, 홍성남, 김은하, 오명옥, 김지숙, 조혜경, 김시애, 강지윤, 신현순, 박지혜, 양은미, 박응석, 장미화, 임혜숙, 리응엔투어린, 박현영, 김선경, 성미라, 최정자, 유수진, 윤혜숙, 이경순, 한송이, 정은주, 이숙, 이미숙, 염기선, 박미정, 고순화, 신성아, 이승훈, 정준영, 안지연, 정양희, 장일미, 최윤경, 정윤수, 김은경, 이동기, 황정미, 권은경, 박미선, 이윤희, 윤은이, 김은희, 이해영, 전준호, 안현정, 허지예, 류경숙, 하티미터, 박혜성, 최인영, 김기철, 이나래, 박경숙, 이숙희, 최을순, 온새미로의료소비자협동조합, 김정연, 유규영, 정계숙, 박선희, 배인남, 오혜정, 김은레, 박선영, 김희정, 조보현, 윤규식, 이민재, 조수정, 김숙희, 김기순, 임희정, 오명숙, 김혜정, 마윤옥, 김은혜, 나호영, 도신형, 정미란, 유남석, 김지혜, 이은주, 은성호, 강태희, 김경화, 나혜미, 장은숙, 한혜진, 홍미희, 고영미, 김선미, 조현경, 신진선, 길정숙, 김경미, 유지영, 오지영, 윤수진, 이미자, 홍희연, 김영진, 조영은, 최문희, 이성란, 송정희, 김충호, 정소연, 권정순, 이은주, 유경미, 김미숙, 김선경, 엄현진, 김미나, 신연선, 이드보라, 이고우리

정기후원자 (2024.02.29. 현재 137명)

김초환, 김보배, 김병규, 박정숙, 김현영, 설향희, 강애미, 기훈, 김경자, 김미경, 김미영, 김미정, 김병옥, 김병철, 김수한, 김은혜, 김주열, 김효정, 류정희, 박경혜, 박금규, 박정금, 박주연, 박지은, 박진리, 서의립, 손창완, 신동국, 신상미, 안정은, 양삼동, 우병락, 유진화, 윤덕이, 윤영철, 윤철호, 이남희, 이상택, 이연재, 이은랑, 이해나, 이희순, 임동식, 장덕운, 조명희, 조성환, 조영빈, 조의철, 차명은, 천미애, 천옥분, 최강수, 최광자, 최성옥, 최철호, 허해자, 현옥순, 홍장표, 한신, 안길만, 김순희, 엄영순, 이명실, 고영인, 김재권, 김미영, 김경화, 강성금, 서영ENG, 이광석, 양기택, 최은주, 안두희, 이진영, (주)카툴스, 김석현, 김석현, 김종훈, 김미경, 김미은, 송영분, 최창환, 박미정, 김수희, 임중석, 류민정, 윤석용, 임영빈, 임완수, 정은주, 이은정, 황유신, 유영미, 박양복, 전구표, 엄기별, 천영미, 유준선, 박경숙, 한성원, 황미숙, 이리라, 박경옥, 김백용, 박미해, 박은향, 변상윤, 민철환, 김민석, 박경구, 이운자, 조미영, 이옥자, 문이근, 허덕행, (주)청명이앤티, 정병만, 김다예, 김미애, 우진, 박미란, 박상호, 정유진, 류종정, 고수현, 김영혜, 우인선, 박현남, 한혜선, 천기숙, 권태분, 박명숙, 이충현, 김수희, 권일혁, 김성현, 양진희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회참여 활동과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을 총회에서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이하 “출자감소”라 한다)을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

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

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
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
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
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
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
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나. 체력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 다. 장애인 문화 예술 서비스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운영 및 위탁사업

- 가. 장애인체육시설 사업
-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다.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사업

3.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제조, 임가공, 유통, 판매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
-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문화 예술 공연 및 강연과 행사기획
7. 카페 운영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지자체 위탁 사업
2. 공모 사업
3. 용역 사업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년 3월 9일